

건축 저작권 온라인등록 절차 안내

1단계 저작권 등록신청 준비자료/신청자격

- 신청 건축물을 나타내는 도면/사진/모형사진/영상 파일.(윈도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확인 가능한 파일 형식. '복제물 제출 안내문' 첨부파일 참고)
- 신청 건축물을 설명하는 1,000자 이하의 글
- 신청인은 저작물의 창작자, 자연인을 원칙으로하며, 2인 이상 공동 건축저작물인 경우 지분을 정해 신청가능
- 법인, 개인사업체 등 단체에서 업무상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, 예외적으로 그 대표자가 저작권 신청이 가능(저작권법 제2조 31호, 제9조 참조)

2단계 저작권 등록신청

- '한국저작권위원회' 사이트(<https://www.cros.or.kr/>)에서 회원가입 (인증서 본인확인)
- 사이트 로그인→ 상단메뉴 중 '저작권 등록' → '일반저작물 등록' → '신청서식 작성' → '복제물 등 구비서류 첨부 제출'
- 1건당 등록수수료 20,000원, 등록면허세 3,600원 결제 (10건 초과하는 경우 건당 10,000원 다량등록 할인적용)
- 저작권 등록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방문신청과 우편신청도 가능

3단계 등록기관의 심사 및 보완요청

- 신청된 저작권은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를 심사하고,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요청
-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을 때, 업무일 기준 8일의 처리기간 내 심사결과를 통보

4단계 등록기관의 결과통보

- 등록이 수리된 경우 '저작권 등록증', 등록이 반려된 경우 '반려 통지증' 을 발급
- 온라인 상 '저작권등록증' 은 1회에 한해 출력가능

※ 상기내용은 '한국저작권위원회' 홈페이지의 내용을 요약/정리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등록 상담 전화 1800-5455를 이용